

201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안

-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1조 8,102억 3천 7백만원 대비 1.2% 증액된 11조 9,534억 8천 2백만원임.

<2011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 감	증감률
계	11,808,748	11,810,237	11,953,482	143,245	1.2
지방세수입	11,595,724	11,595,724	11,756,466	160,742	1.4
보통세	10,181,888	10,181,888	10,323,539	141,651	1.4
목적세	1,257,352	1,257,352	1,259,876	2,524	0.2
지난년도수입	156,484	156,484	173,051	16,567	10.6
세외수입	213,024	213,024	197,016	-16,008	-7.5
경상적세외수입	33,564	33,564	17,700	-15,864	-47.3
임시적세외수입	179,460	179,460	179,316	-144	-0.1
지방교부세	0	1,489	0	-1,489	-100
지방교부세	0	1,489	0	-1,489	-100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합 계	11,595,724	11,595,724	11,756,466	160,742	1.4
보 통 세	10,181,888	10,181,888	10,323,539	141,651	1.4
취 득 세	3,430,534	3,430,534	2,911,819	-518,715	-15.1
취 득 분	1,577,945	1,577,945	1,468,689	-109,256	-6.9
등 록 분	1,852,589	1,852,589	1,443,130	-409,459	※기타분 구제환 -22.1
주 민 세	40,998	40,998	60,707	19,709	48.1
균 등 분	40,998	40,998	43,773	2,775	6.8
재 산 분	-	-	16,934	16,934	※구제-시세
재 산 세	1,621,937	1,621,937	1,707,893	85,956	5.3
특 별 시 분	778,925	778,925	800,100	21,175	2.7
과 세 특 례 분	843,012	843,012	907,793	64,781	※구 '도시계획세' 7.7
자 동 차 세	1,024,730	1,024,730	1,108,886	84,156	8.2
소 유 분	581,349	581,349	608,286	26,937	4.6
주 행 분	443,381	443,381	500,600	57,219	※구 '주행세' 12.9
레 저 세	120,269	120,269	132,405	12,136	10.1
담 배 소비 세	567,735	567,735	553,101	-14,634	-2.6
지 방 소비 세	389,350	389,350	422,486	33,136	8.5
지 방 소득 세	2,984,372	2,984,372	3,426,242	441,870	14.8
소 득 분	2,984,372	2,984,372	3,156,860	172,488	5.8
종 업 원 분	-	-	269,382	269,382	※구제-시세
도 축 세	1,963	1,963	0	-1,963	※폐지
목 적 세	1,257,352	1,257,352	1,259,876	2,524	0.2
지역자원시설세	141,883	141,883	152,851	10,968	7.7
특 정 자 원 분	428	428	339	-89	-20.8
특 정 부 동 산 분	141,455	141,455	152,512	11,057	7.8
지 방 교 육 세	1,115,469	1,115,469	1,107,025	-8,444	-0.8
지 난 년 도 수 입	156,484	156,484	173,051	16,567	10.6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10년		2011년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총 계	213,024	214,513	197,016	-17,497	-8.2
세외수입 소계	213,024	213,024	197,016	-16,008	-7.5
경상적세외수입	33,564	33,564	17,700	-15,864	-47.3
공유재산임대료	8,423	8,423	3,631	-4,792	-56.9
증 지 수 입	728	728	797	69	9.5
공공예금이자수입	23,050	23,050	12,517	-10,533	-45.7
기타이자수입	1,363	1,363	755	-608	-44.6
임시적세외수입	179,460	179,460	179,316	-144	-0.1
국유재산매각수입	3,577	3,577	6,664	3,087	86.3
시유재산매각수입	168,880	168,880	123,452	-45,428	-26.9
소계	4,647	4,647	46,074	41,427	891.5
변상금	1,535	1,535	3,361	1,826	119.0
위약금(지체상금)	165	165	89	-76	-46.1
체납처분 수입	7	7	7	0	0
시도비반환금	469	469	407	-62	-13.2
기타 잡수입	2,471	2,471	2,210	-261	-10.6
기타 잡수입	-	-	40,000	40,000	※ 신규
과년도재산수입	2,351	2,351	3,122	771	32.8
지난년도 기타	5	5	4	-1	-20.0
지방교부세	0	1,489	0	-1,489	-100
지방교부세	0	1,489	0	-1,489	-100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1,607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1.4%)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1,416억 5천1백만원(전년대비 1.4%) 증가,
 - 목적세는 25억 2천4백만원(전년대비 1.2%) 증가,
 - 지난해도수입은 165억 6천7백만원(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160억 8백만원(전년대비 7.5%) 감소하였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158억 6천4백만원(전년대비 47.3%)이 감소,
 -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천 4백만원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증가 내역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으로 주민세(197억원), 지방소득세(4,419억원) 및 목적세에서 보통세 변경으로 재산세(860억원)와
 - 자동차세(842억원), 레저세(121억원), 지난해도시세(166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31억원), 시금고 출연금 세입반영에 따른 기타잡수입(400억원), 지난해도 재산수입(8억원) 등임
- 세입예산과목별 주요감소 내역은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교환 등에 따른 취득세(5,187억원)와 지방교육세(84억원), 담배소비세(146억원), 도축세(20억원), 공유재산임대료(48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105억원), 기타이자수입(6억원), 사유재산매각수입(454억원), 지방교부세(15억원), 위약금(0.8억원), 시도비반환금(0.6억원) 등임.

■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073천원으로 금년보다 1.2% 증가하였음.

※ 시세 세입(11조 7,565억원)중 지난해도시세(1,731억원)를 제외하고 2009년말 기준 현재 인구수(1,080만명)로 나눈 것임.

2. 세출예산안

■ 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1조 6,062억 5천 7백만원
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4,302억 1천 4백만원 대비
12.3% 증액된 수준이며,

2010년도 간주처리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조 4,317억
3백만원 대비 12.2%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총 계	1,430,214	1,431,703	1,606,257	174,554	12.2	
재무관리	소 계	307,272	308,761	332,397	23,636	7.7
	인 건 비	186,918	186,918	215,197	28,279	15.1
	기본경비	2,205	2,205	2,480	275	12.5
	사 업 비	118,149	118,149	114,720	-3,429	-2.9
	재무활동	0	1,489		-1,489	-100
교부금 기타	1,122,942	1,122,942	1,273,860	150,918	13.4	

■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은

-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 합리화에 재무국 세출예산의 0.6%인 96억 5천 3백만원,
- 재무관리 효율화와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6.5%인 1,043억 4천 3백만원임.
-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3.6%인 2,176억 7천 7백만원,
- 징수교부금에 15.6%인 2,511억 9천 5백만원,
- 재정보전금에 63.7%인 1조 22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11년도 전략목표별 '1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사업별	2010년도		2011예산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1,430,214	1,431,703	1,606,257	174,554	12.2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11,151	11,151	9,559	-1,592	-14.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으로 세무행정의 합리화	71	71	94	23	32.4	
재무관리 효율화로 경영 마인드 제고	1,128	1,128	1,321	193	17.1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105,009	105,009	103,022	-1,987	-1.9	
세입징수 관리강화	790	790	724	-66	-8.4	
일반예산	인 건 비	186,918	186,918	215,197	28,279	15.1
	기 본 경 비	2,205	2,205	2,480	275	12.5
	징 수 교 부 금	249,026	249,026	251,195	2,169	0.9
	재 정보 전 금	873,916	873,916	1,022,665	148,749	17.0
	재 무 활 동 비	-	1,489	0	-1,489	-100.0

○ 201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0년도		2011예산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합 계	1,430,214	1,431,703	1,606,257	174,554	12.2
재 무 과	974	974	1,174	200	20.5
(정책) 회계운영개선	974	974	1,174	200	20.5
(단위)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운영	974	974	1,174	200	20.5
물 품 구 매 관 리 효 율 화	667	667	932	265	39.7
결 산 등 업 무 추 진	248	248	197	-51	-20.5
지 방 재 정 관 리 시 스템 운 영	37	37	33	-4	-10.8
계 약 심 의 위 원 회 등 운 영	22	22	12	-10	-45.4
공유재산과	105,009	105,009	103,022	-1,987	-1.9
(정책)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05,009	105,009	103,022	-1,987	-1.9
(단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105,009	105,009	103,022	-1,987	-1.9
행 정 수 요 대 비 공 유 재 산 확 보	100,000	100,000	95,000	-5,000	-5.0
국·시 유 재 산 관 리 위 임	4,027	4,027	5,805	1,778	44.2
공 유 재 산 관 리 및 운 영	963	963	1,661	698	72.5
공 유 재 산 문 서 관 리 시 스템 운 영	7	7	7	0	0
지 리 정 보 기 반 시 유 재 산 총 합 정 보 시 스템 구 축	0	0	549	549	100
국 유 재 산 관 리 의 효 율 화	12	12	0	-12	-100
계약심사과	154	154	147	-7	-4.5
(정책)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154	154	147	-7	-4.5
(단위)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154	154	147	-7	-4.5
계 약 심 사 업 무 추 진	24	24	24	0	0
원 가 관 리 시 스템 운 영	130	130	123	-7	-5.3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0년도		2011예산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세 제 과	91	91	108	17	18.7
(정책)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20	20	14	-6	-30
(단위) 세수증대 동기부여	20	20	14	-6	-30
세 무 공 무 원 정 책 토 론 회	20	20	14	-6	-30
(정책)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71	71	94	23	32.4
(단위) 재 정 자 주 권 확 대	71	71	94	23	32.4
지 방 세 관 련 위 원 회 운 영	71	71	94	23	32.4
세 무 과	11,921	11,921	10,269	-1,652	-13.8
(정책) 시 세입 목표달성	4,057	4,057	2,537	-1,520	-37.4
(단위) 효 율 적 인 세 입 관 리	1,260	1,260	1,219	-41	-3.2
지방소득세소득특별징수납세조합보조	233	233	276	43	18.5
지 방 세 고 지 서 인 쇄 통 합 관 리	927	927	908	-19	-1.9
상 시 세 금 납 부 체 제 구 축	100	100	35	-65	-64.9
(단위) 세 수 증 대 동 기 부 여	208	208	274	66	31.7
시 세 세 입 안 정 적 확 보 지 원	120	120	186	66	55
모 범 납 세 자 지 원	88	88	88	0	0
(단위)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2,075	2,075	496	-1,579	-76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86	186	425	239	128.5
세 무 조 사 인 터 넷 신 고 시 스템 운 영	32	32	32	0	0
세무종합시스템II 보안 및 모니터링 강화	0	0	39	39	100
광역형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857	1,857	0	-1,857	-100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0년도		2011예산	2010년대비	
	당초	최종		증감	증감률 (%)
(단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514	514	548	34	6.6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14	514	548	34	6.6
(정책) 조세정의 실현	7,864	7,864	7,732	-132	-1.6
(단위) 강도 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7,864	7,864	7,732	-132	-1.6
시세입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	2,793	2,793	2,724	-69	-2.4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	4,796	4,796	4,832	36	0.8
고액 체납 시세 징수 강화	275	275	176	-99	-35.9
일반예산	1,312,065	1,313,554	1,491,537	177,983	13.6
(정책) 일반예산	1,312,065	1,313,554	1,491,537	177,983	13.6
(단위) 인 건 비	186,918	186,918	215,197	28,279	15.1
(단위) 기 본 경 비	2,205	2,205	2,480	275	12.5
(단위) 징 수 교 부 금	249,026	249,026	251,195	2,169	0.9
(단위) 재 정 보 전 금	873,916	873,916	1,022,665	148,749	17
(단위) 재 무 활 동 비	-	1,489	0	-1,489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인건비에서 기본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39백만원)는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변경

Ⅱ. 검토의견

1. 2011년도 경기전망

- 정부는 2011년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수요유지와 함께 금융 시장 안정, 고용·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5%의 실질경제성장을 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1년도 예산을 309조 6천억원(예산 215조 9천억원, 기금 93조 6천억원)으로 책정하였음.(전년도 대비 5.7% 증액)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원화강세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출둔화,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민간소비는 3.2%, 설비투자는 6.3% 증가가 전망되며, 건설투자는 0.5%가 감소되는 등 2011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1년도 경제성장률을 2010년(5.8%)보다 1.9%p 낮은 3.9%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관의 2011년도 경기 전망 지표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3.8%, LG경제연구원은 4.0%, 한국은행 4.5%,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4%, 현대경제연구원은 3.9%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외 기관 또한 IMF 4.5%, OECD 4.7%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0년도 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세수입과 관련한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보면, 수도권외의 주택, 토지에 대한 거래의사 및 수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11. 4, 세미나자료),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는 최근4년간 평균 대비 약 18.6%가 하락하고 있으나 2010년 9월 이후 최근 2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5.9%, 22.7%)한 것으로 나타났음(국토해양부 2010.11.16 발표자료).

<201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한국은행 (7월)	OECD (6월)	IMF (10월)	KDI (5월)	SERI (10월)	NABO (10월)	국회예산 정책처
2010	5.8	5.9	5.8	6.1	5.9	5.9	5.8	5.8
2011	5.0	4.5	4.7	4.5	4.4	3.8	3.9	3.9

주 : ()는 해당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 일자

2. 세입예산 검토

보 통 세

전년대비 10.5% 증액된 10조 3,235억3천9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71.4%(전년도 60.0%)를 차지하고 있음.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의 취득과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관련 등기·등록시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4.8%(전년도 29.6%)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는 취득분 1조 4,687억원, 등록분 1조 4,431억원 등 총 2조 9,118억원(전년 대비 15.1% 감소¹⁾)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1)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최종예산액(3조 4,305억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이는 2011년도 취득세 전망시,

부동산의 경우는 2011년도 예상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거래신장률(105.0%)과 과표신장률(주택101.02%, 토지 101.54%, 건물 100.00%)을 적용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추계로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취득분 취득세'는 2010년 징수예상액 대비 소폭 증가(5.9%)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부동산 등록분 취득세'의 경우도 부동산 취득분과 같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취득무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등록면허세)로 바뀔에 따라 2010년 징수예상액 대비 감소(Δ 15.4%)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차량의 취득세(취득분과 등록분)의 경우는 부과액신장률(101.43%)과 징수율(99.84%, 최근 5년 중 최고 최저 제외 3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한 추계로 경기회복 및 신규차량 판매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관련 수요와 거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2010년도 예산 대비 세입징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계할 경우, 실질 수입예상규모 보다 다소 과대 계상한 부분(Δ 180억원)²⁾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취득세 감면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³⁾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600억원 이상)이 있는 바, 이를 포함한 당해 세입예산의 조정(420억원 증액)이 요망된다 하겠음.

-
- 2) 국회예산정책처 3.9% 및 국내외 주요기관의 실질경제성장률 3.8~4.7% 등을 감안할 경우
→ 거래신장률 4.2% 적용시 : 약 180억원 감소 예상
(서울시 추계 → 정부발표 실질성장률 5%를 거래신장률로 적용)
 - 3) 주택거래 회복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2010년12월31일에서 1년을 연장하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고자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김정권의원 대표발의 대안의결, 2010.12.8) 되었음.

▶ 취득세 세입추계 : 2조 9,118억 1천 9백만원

● 취득분 취득세(A+B) : 1조 4,686억 8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부동산 취득분(A) - 1,305,124백만원】

- '10년 부과전망액 : 1,260,171백만원
- '11년 과세물건별 부과전망 : 1,332,711백만원
 - 주택 : '10부과전망액 × 주택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langle 1,260,171 \text{백만원} \times 52.78\% \times \underline{105.00\%} \times 101.02\% = 705,498 \text{백만원} \rangle$
 - 건물 : '10부과전망액 × 건물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langle 1,260,171 \text{백만원} \times 35.40\% \times \underline{105.00\%} \times 100.00\% = 468,405 \text{백만원} \rangle$
 - 토지 : '10부과전망액 × 토지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langle 1,260,171 \text{백만원} \times 11.82\% \times \underline{105.00\%} \times 101.54\% = 158,808 \text{백만원} \rangle$

추 계 액 : 1,305,124백만원

'10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징수율
 ⇒ 1,332,711백만원 × 97.93% = 1,305,124백만원

【차량 취득세(B) - 163,565백만원】

'10년 부과액 × 부과액신장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 161,517백만원 × 101.43% × 99.84% = 163,56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1,517,206	1,537,086	1,567,694	1,642,702	1,577,945	1,468,689
결 산	1,913,495	1,680,881	1,667,349	1,511,159	1,391,535	(5.5%↑)
결산율	126.12	109.36	106.36	91.99	88.19	

● **등록분 취득세(A+B) : 1조 4,431억 3천만원**

산 출 내 역

【부동산 등록분(A) - 1,120,486백만원】

- '10년 부과전망 : 1,081,892백만원
- '11년 과세물건별 부과전망 : 1,138,721백만원
 - 주택 : '10부과전망액 × 주택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081,892\text{백만원} \times 52.78\% \times 105.00\% \times 101.02\% = 605,689\text{백만원}>$
 - 건물 : '10부과전망액 × 건물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081,892\text{백만원} \times 35.40\% \times 105.00\% \times 100.00\% = 402,139\text{백만원}>$
 - 토지 : '10부과전망액 × 토지거래비중 × 거래신장률 × 과표신장률
 $<1,081,892\text{백만원} \times 11.82\% \times 105.00\% \times 101.54\% = 136,342\text{백만원}>$

추 계 액 : 1,120,486백만원

'10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징수율
 ⇒ 1,144,170백만원 × 97.93% = 1,120,486백만원

【차량 등록세(B) - 322,644백만원】

'10년 부과전망액 × 신장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 특수요인
 ⇒ 321,295백만원 × 102.32% × 99.84% - 5,579백만원 = 322,644백만원

○ **차량등록세(취득무관) 특수요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전망
금 액	4,910	5,018	5,516	6,572	6,062	5,420	5,499	5,579
신장율	-	102.20	109.92	119.14	92.24	89.41	101.46	101.45

※ '11년도 전망액은 최근 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세액신장율을 반영한 수치임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무관등록세(저당권, 말소 등)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서 사세에서 구세로 변경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1,688,827	1,718,019	1,744,058	1,541,990	1,852,589	1,443,130
결 산	2,121,596	1,876,864	1,822,785	1,840,405	1,645,009	(△ 12.3% ↓)
결산율	125.63	109.25	104.51	119.35	88.80	

▶ **재추계(취득세)(A+B+C) : 2조 9,538억 1천 9백만원**

● **집행부 취득세 추계액 (A) : 2,911,819백만원**

● **경제성장률 적용 추계감소분(B) : △ 18,000백만원**

- 거래신장률 4.2% 적용시

: 국회예산정책처 3.9% 및 국내외 주요기관의 실질경제성장률 3.8~4.7%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증가분 (C) : 60,000백만원**

- 주택 유상거래 감면 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구분	현행	개정	
감면기간	'06.9.1. ~ '10.12.31	'11.1.1 ~ '11.12.31	
대상	유상거래, 주택	유상거래, 9억원 이하인 1주택	
적용세율	4% ⇒ 2%	9억이하·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 최근 3년간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 취득등록세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11월	167,216	699,449	154,775	505,239	12,441	194,210
2009년	277,667	1,202,737	255,967	877,669	21,700	325,068
2008년	320,044	1,063,772	309,102	893,108	10,942	170,664

※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 제외될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세입감소가 예상됨.

■ 주민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부과하는 세입으로, 607억 7백만원 (전년 예산대비 48.1%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현재 주민세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있으나,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예 따라 구세인 재산분 주민세가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주민세 추계(A+B) : 607억 7백만원

산 출 내 역	
【균등분(A) - 43,773백만원】	
○ 개인세대주 : 16,322백만원	
▶ '10년 부과전망액 × 주민등록세대수 신장률 × 징수율 - 특수요인 (19,829백만원) × (100.58%) × (82.32%) - 95백만원 = 16,322백만원	
○ 개인사업자 : 15,998백만원	
▶ '10년 부과전망액 × 개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17,081백만원) × (103.38%) × (90.60%) = 15,998백만원	
○ 법인사업자 : 11,453백만원	
▶ '10년 부과전망액 × 법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12,735백만원) × (104.22%) × (86.29%) = 11,453백만원	
【재산분(B) - 16,934백만원】	
▶ '10년 부과전망액 × 전3년 부과액신장률 × 징수율 (16,326백만원) × (103.99%) × (99.74%) = 16,93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36,892	37,960	40,386	40,386	40,998	60,707
결 산	37,802	38,706	39,781	41,584	42,635	(42.4%↑)
결산율	102.47	101.97	98.50	102.97	103.99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 종업원분 소득에 부과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3.7%인 3조 4,262억 4천 2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4.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소득세분 : 소득할(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별), 소득세할(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퇴직소득)

-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의 경우는 경기회복과 소득투명화 및 법인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와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된 종업원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정부의 세입예산 조정에 영향을 받는 세입으로, 정부 세입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국세인 법인세가 감액 조정 되었는데, 이에 따른 세입조정(△44억 4천 3백만원)과 함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실질경제성장률(정부 및 서울시 5% : 2,694억원, 국내외주요기관(3.8%~4.5%) 4.2% : 2,673억원 → △21억원)을 감안할 경우 다소 과대 계상되었다고 추산되는 바, 당해 세입 예산규모에 대한 조정(△65억 4천 3백만원)이 요망된다 하겠음.

※ 소득세분의 경우 2010년 경기회복 및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에 따른 소득의 투명화 및 부동산 경기회복 등으로 2010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법인세분의 경우 경기회복 및 수출증가에 따른 법인수익 증가로 2010년도 전망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특별징수분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고액연봉자 증가와 실업률 감소로 2010년 전망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 추계(A+B) : 3조 4,262억 4천 2백만원

산 출 내 역

【소득분(A) - 3,156,860백만원】

- 소득세분 : 738,960백만원
 - ▶ ('10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세액신장률 × 징수율)
(773,823백만원 × 108.95% × 87.65%) = 738,960백만원
- 법인세분 : 1,180,803백만원
 - ▶ ('10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세액신장률 × 징수율)
(1,134,363백만원 × 110.75% × 93.99%) = 1,180,803백만원
- 특별징수 : 1,237,097백만원
 - ▶ ('10년 부과전망액 ×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세액신장률 × 징수율)
(1,122,293백만원 × 111.04% × 99.27%) = 1,237,097백만원

【종업원분(B) - 269,382백만원】

- ▶ ('10년 부과전망액 × '10년 예상경제성장률 × 징수율)
(257,382백만원 × 105.00% × 99.74%) = 269,382백만원

※ 구세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로 변경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2,171,943	2,156,404	2,844,323	3,312,859	2,984,372	3,426,242
결 산	2,343,528	2,850,413	3,115,623	2,858,544	2,858,544	(19.86% ↑)
결산율	107.90	132.18	109.54	86.29	95.78	

■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비율(2010년~2012년 : 5%, 2013년 이후 : 10% 예정) 및 서울시 배분비율(행정안전부 배부기준 15.96%)을 곱하여 산정하여, 2011년도 지방소비세는 4,224억 8천 6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8.5%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정부의 세입예산 규모의 증감에 영향을 받는 세입이므로, 정부 세입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부가가치세액의 감액(△58억원) 규모를 감안한 당해 세입예산규모의 조정(△4천 6백만원)이 요망된다 하겠음.

▶ 지방소비세 추계 : 4,224억 8천 6백만원

산 출 내 역

【지방소비세 - 422,486백만원】

- '11년 부가가치세(국세) 추계액 × '10년 지방소비세율 × 서울시 배분비율
▶ (52조 9,431억원 × 5% × 15.96%) = 422,486백만원

※ 2010년도 징수전망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389,350	422,486
결 산	394,370	(7.13%↑)
결산율	101.29	

▶ 재추계(지방소비세) : 4,224억 4천만원

● 국세조정에 따른 감액분 : △46백만원

- 부가가치세 감액분 적용(△58억원 : 529,431억원→529,373억원)
⇒ △46백만원(부가가치세 감액을 적용)

■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소유분 자동차세) 또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 자동차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판매 호조와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는 정부의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의한 세율 인하(2009.5. 21, 교통세의 30.0% → 26.0%)이후 세율 미조정으로 이에 따른 증감요인은 없으나, 우리시 시내버스 천연가스(CNG) 사용차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요인(유류관련 주행분 감소 예상)이 있는 반면,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대규모 증액 요인이 있어 전년도 전망대비 대폭 증가 예상되는 등
- 2011년도 자동차세 전체 세입은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하는 1조 1,088억 8천 6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6.5%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그러나,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도 정부의 세입예산규모의 증감에 영향을 받는 세입으로 정부 세입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교통 에너지환경세액의 감액(△903억원) 규모를 감안한 당해 세입예산 규모의 조정(△13억 5천 6백만원)이 요망된다 하겠음.

▶ 자동차세 추계(A+B) : 1조 1,088억 8천 6백만원

● 소유분 자동차세(A) : 6,082억 8천 6백만원

산 출 내 역
○{'10년 부과전망액 × 자동차등록대수신장률} × 징수율 {(659,296백만원 × 100.90%) × 91.44%} = 608,286백만원

※ 자동차등록대수 신장률 : 100.90%(최근 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 소유분 자동차세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 위 : 백 만 원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450,996	454,440	514,359	547,346	581,349	608,286
결 산	471,862	513,826	558,336	568,721	599,696	(1.4%↑)
결산율	104.6	113.1	108.5	103.9	103.16	

● 주행분 자동차세(B) : 5,006억원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187,159 백만원 - 전국자동차세보전분(844,200백만원) × 우리시인분비율('10년 상반기 기준)(22.17%)
○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313,441 백만원 - 택시·화물(운수물류담당관) '11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 : 298,000백만원 - 버스(버스정책담당관) '11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 : 15,441백만원

※ 주행분 자동차세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533,830	545,280	669,544	542,214	443,381	500,600
결 산	503,760	589,062	496,820	437,202	352,054	(42.19%↑)
결산율	94.4	108.0	74.2	80.6	79.40	

《연도별 주행세율 변동내역》

구 분	'00.1.1	'01.7.1	'02.7.1	'03.7.1	'04.3.1	'05.7.8	'06.7.1	'07.7.23	'08.3.10	'08.10.7	'09.5.21
적용세율	3.2%	11.5%	12.0%	14.95%	21.5%	24.0%	26.5%	32.5%	27.0%	30.0%	26.0%

《연도별 교통세율 변동내역》

구 분	'04.7.1 ~'05.7.7	'05.7.8 ~'06.6.30	'06.7.1 ~'07.7.22	'07.7.23 ~'08.3.9	'08.3.12 ~'08.10.15	'08.10.15 ~'09.5.20	'09.5.21~
휘발유	545원	535원	526원	505원	526원	514	529원
경 유	287원	323원	351원	358원	351원	364	375원

《운수업체(유가) 보조금 안분율 변동 현황》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8.12	'09.2
비율	21.1%	19.3%	19.9%	15.71%	16.16%	16.21%	14.03%	13.71%	10.02%

▶ 재추계(자동차세) : 1조 1,075억 3천만원

● 주행분 감액분(국세조정에 따른) : △ 1,356백만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액분 적용(△903억원 : 124,571억원→123,668억원)
⇒ △ 1,356백만원(교통환경세 감액을 적용)

■ 레저세

-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 레저활동의 다양화와 사행성 산업 위축 등으로 경마·경륜 등의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세입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총 1,324억 5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0.1%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 추계(A+B+C) : 1,324억 5백만원

산 출 내 역	
[레저세 추계액 : 132,405백만원]	
○ 경마(A) : ('10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95,925백만원 × 104.90%) × 100.0% = 100,625백만원
○ 경륜(B) : ('10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21,455백만원 × 103.00%) × 100.0% = 22,099백만원
○ 경정(C) : {'10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 × 징수율	
	(10,913백만원 × 88.71%) × 100.0% = 9,681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	108,106	91,324	95,405	102,931	120,269	129,700
결산	90,667	107,129	117,400	122,293	128,293	(1.1%↑)
결산율	83.9	117.3	123.1	118.8	106.67	

《과세항목별 세입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9월말
계	207,495	183,857	90,667	107,129	117,400	122,293	93,765
경마	79,082	73,194	70,831	78,759	84,803	86,571	68,276
경륜	125,312	107,023	15,886	19,215	18,172	20,408	15,957
경정	3,101	3,640	3,950	9,155	14,425	15,314	9,532

■ 담배소비세

- 최근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성인흡연을 감소로 담배 판매량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 최근 3년간 평균 인구증감률(99.8%)과 최근 5년간평균 흡연증감률(98.71%)을 적용하여 5,531억 1백만원(전년 예산대비 2.6%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추계 : 5,531억 1백만원

산 출 내 역

○ {('10년도 부과전망액 × 서울시인구증감률 × 흡연증감률) × 징수율 }
 { (561,452백만원 × 99.80% × 98.71%) × 100.0% } = 553,101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0 추계
예 산	547,885	547,115	550,333	569,322	567,735	553,101
결 산	582,783	565,427	557,956	641,453	561,452	(△1.5%)
결산율	106.4	103.3	101.4	112.7	98.9	

《흡연율 변화 추이》

연월	'06.3	'06.6	'06.9	'07.12	'08.6	'08.12	'09.6	'09.12	'10.6
흡연율	25.9%	24.6%	24.1%	23.0%	21.9%	22.3%	22.1%	23.3%	22.4%

■ 재산세

-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제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 재산세로,
- 특별시분재산세는 2011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11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8,001억원(전년 예산 대비 2.7%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재산세는 경기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하락세에 따라 증가폭은 낮을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별 과표 인상률(주택 1.02%, 토지 1.54%, 건물 0.0%) 등을 감안하여 9,077억 9천 3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7.7% 증가)을 계상하여 재산세는 총 1조 7,078억 9천 3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5.3%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재산세 추계(A+B) : 1조 7,078억 9천 3백만원

● 특별시분재산세(A) : 8,001억원

산 출 내 역
○ 2011년 재산세 추계총액(25개구) × 2011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비율 1,600,200백만원 × 50.0% = 800,100백만원

※ 최근 3년간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전망	2010 추계
예 산	603,914	685,288	778,925	800,100
결 산	639,831	663,728	812,428	(△1.57%)
결산율	105.9	96.85	104.30	

●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재산세(B) : 9,077억 9천 3백만원

산 출 내 역	
○ 토지분	'10년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331,366백만원 × 101.54% × 96.93% = 326,139 백 만 원
○ 주택분	'09년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449,412백만원 × 101.91% × 96.93% = 443,936 백 만 원
○ 건물분	'09년 부과전망액 × 과표인상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73,541백만원 × 102.32% × 96.93% = 72,937 백 만 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509,532	614,437	801,038	843,542	843,012	907,793
결 산	600,253	721,596	831,599	897,099	897,099	(1.2%↑)
결산율	117.8	117.4	103.8	106.3	106.42	

목적세

목적세는 전년대비 40.0% 감액된 1조 2,598억 7천 6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8.7%(전년도 1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에 목적세로 있던 도시계획세(2010년 예산액 : 8,430억원)가 보통세(재산세)로 변경된데 따른 것임.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기타 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부과하는 자원분(지역개발세)과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분(공동시설세)으로,

- 자원분(지역개발세)의 경우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징수되고 있으나 최근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3억 3천 9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20.8% 감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부동산분(공동시설세)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증가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여 1,525억 1천 2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7.8% 증가)으로 계상하는 등 지역자원세는 총 1,528억 5천 1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7.7%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역자원세 추계(A+B) : 1,528억 5천 1백만원

● 자원분(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A) : 3억 3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 '10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률(전 3년평균) × 징수율(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390백만원 × 91.60% × 94.88% =	339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09 전망	2010 추계
예 산	489	545	499	505	428	339
결 산	559	522	485	454	370	(△8.4%)
결산율	114.3	95.8	97.2	89.9	86.45	

● 부동산분(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B) : 1,525억 1천 2백만원

산 출 내 역	
○ 주택 : '10년 부과전망액 × 과표신장률 × 징수율(최저·최저제외 3년평균)	
36,336백만원 × 101.02% × 97.85% =	35,918백만원
○ 건물 : '10년 부과전망액 × 과표신장률 × 징수율(최저·최저제외 3년평균)	
119,156백만원 × 100.00% × 97.85% =	116,594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122,607	137,704	144,489	151,902	141,455	152,512
결 산	131,797	136,968	142,479	138,367	152,149	(0.2%↑)
결산율	107.5	99.5	98.6	91.1	107.56	

■ 지방교육세

- 등록분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50%),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 2011년도에는 본세인 재산세, 레저세 등은 증가하나 등록분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1조 1,070억 2천 5백만원(전년 예산대비 0.8% 감액)으로 추계하였음.
- 그러나, 교육세의 경우도 본세인 등록분취득세 등의 추계변동에 따라 세수추계규모가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분취득세 등 본세의 추계변동 규모와의 연계를 통한 검토(42억원 증액)가 요망된다 하겠음.

▶ 지방교육세 추계 : 1조 1,070억 2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취득세(등록분) :	279,087백만원 '11년도 추계 1,395,436백만원 × 20%
○ 레저세 :	52,962백만원 '11년도 추계 132,405백만원 × 40%
○ 주민세(균등분) :	10,943백만원 '11년도 추계 43,773백만원 × 25%
○ 재산세 :	320,507백만원 '11년도 추계 1,602,534백만원 × 20%
○ 자동차세 :	166,975백만원 '11년도 추계 556,583백만원 × 30%
○ 담배소비세 :	276,551백만원 '11년도 추계 553,101백만원 × 50%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 산	951,835	972,435	1,077,654	1,080,500	1,115,469	1,107,025
결 산	1,059,130	1,080,742	1,149,549	1,153,157	1,097,638	(△0.9%)
결산율	111.3	111.1	106.7	106.7	98.40	

▶ 재추계(지방교육세) : 1조 1,112억 2천 5백만원

● 등록분 취득세 증감분 적용 : 4,200백만원

- 등록분 취득세 증액(420억원 : 2조 9,118억원→2조 9,538억원)
- ⇒ 등록분 취득세의 20% 상당액 적용 : (42,000백만원×약50%)×20%

지난년도 시세

- 해당연도 출납정리 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을 현금 영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각 세목별 현년도 예상체납액을 산정 $\{(2010년\ 부과전망액 - 징수전망액) \times$ 결손처분율(24.96%, 전5년 중 최저결손률)}하고, 체납에 의한 연초이월 체납액 대비 연말 체납조정증감률(8.11%, 전5년중 최고 조정비율)과 징수율(22.18%, 전5년 중 최고 징수율)을 적용하여 1,730억 5천 1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10.6% 증액)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년도 시세’ 추계시 적용하고 있는 “현년도 결손처분율”과 “연초 이월체납액 대비 연말 조정체납증감률” 및 “징수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 전년도의 추계기법과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바, 과거연도와 같은 수준에 맞추어 시계열분석법에 의하여 추계(1,588억 3천 6백만원)⁴⁾할 경우보다 과다(약 142억원)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2011년도 ‘지난년도 시세’ 세입예산액에 대하여는 과대계상 부분만큼 삭감 조정이 요망된다 하겠음.
- ※ ‘지난년도 시세’ 추계시 적용하고 있는 “현년도 결손처분율”의 경우는 2010년도 예산 추계 당시에는 직전 5개년도 중 최고 결손율(35.07%)을 반영한 반면, 2011년도 예산 추계에는 직전 5개년도 중 최저 결손율(24.96%)을 적용하고 있어 지난년도 시세징수 대상을 과다하게 추계{약 336억원 : $332,634\text{백만원} \times (35.07\% - 24.96\%)$ }하고 있으며,

4) 최근 3년간 과년도 시세 징수실적의 추세에 따른 추계(2010년 10월~12월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중 최고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추산하고, 2008년도 및 2009년도는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추계)

※ “연초 이월체납액 대비 연말 조정체납증감률”의 경우도 과거에 전5년 평균(5.97%)으로 추정하던 것을 전5년 중 최고조정비율(8.11%)로 추정하고, “징수율”의 경우도 전5년 평균징수율(18.71%)을 반영하던 것을 전5년 최고징수율(22.18%)을 적용하여 전년도의 추계기법 보다 과가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특정 세목에 대해서는 세목별 체납 사유의 분석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 징수목표 체납액을 추계하고, 일부세목의 경우는 전체 체납액 규모와 징수 목표 및 징수율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수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지난년도 시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세수추계 기법의 연구 및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년도시세 추계 : 1,730억 5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10년도 이월예상 총체납액 × 연초대비 연말 체납액 조정비율 × 징수율

▶ '11년도 : $(721,684\text{백만원} \times 108.11\%) \times 22.18\% = \mathbf{173,051\text{백만원}}$

→ 전5년중 **최고**조정비율 → 전5년 **최고**징수율

⇔ '10년도 : 전5년중 **평균**조정비율(105.97%) → 전5년 **평균**징수율(18.71%)

※ '10년도 이월예상 총 체납액 = 721,684백만원

'10년도 총체납액예상액 - 징수전망액 - 결손처분예상액 + 당해연도 발생 예산체납액

856,547백만원 - 162,007백만원 - 222,465백만원 + 249,609백만원

⇒ 당해연도 발생 예산체납액 : 249,887백만원

('10년 부과전망 - '10년 징수전망) × 결손처분율

(9,017,309백만원 - 8,684,675백만원) × 24.96%

※ 최근 5년간 징수율,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총채납액	740,876	791,483	781,924	748,968	856,547	721,684
예산	122,221	127,834	140,349	151,477	156,484	173,051
결산	145,150	149,000	154,161	166,104	162,007	(6.8%↑)
징수율	19.6	18.8	19.7	22.2	18.9	

▶ 재추계(지난년도 시세) : 1,588억 3천 6백만원

산출내역

○ 최근 3년간 징수실적 및 징수전망액 평균

: (2008년 징수액 + 2009년 징수액 + 2010년 징수전망액) ÷ 3

(154,161백만원+166,104백만원+156,245백만원)÷3 = **158,836백만원**

※ '10년도 징수전망액 = 156,245백만원

: 2010년 1월~9월 징수실적 + 10월~12월 전망(2008년 + 2009년 징수액평균)

128,514백만원 + 27,731백만원

<지난년도시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56,245	5,407	5,193	28,823	24,000	15,053	15,099	14,981	10,680	9,278	9,852	9,073	8,806
2009년	166,104	4,197	9,946	25,221	23,931	16,115	18,170	13,092	12,103	13,747	8,827	10,861	9,894
2008년	154,161	6,832	8,577	27,432	21,527	16,083	14,196	13,728	9,917	9,991	10,876	7,285	7,717

※ 2010년 10~12월은 전망치(2008년과 2009년 동월 평균)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공금예금이자수입, 임대료, 변상금 등으로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 2,126억 8천 5백만원 대비 7.4% 감소된 1,970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105억원)과 공유재산임대료(△48억원) 및 공유재산매각수입(△454억원)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임.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자치구 관리위임 재산임대수입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평균 추계(※특별징수 제외)의 불균형으로 2010년 징수전망액(8,662,759천원)에서 특별징수분(질병관리본부임대수입, 6,709,932천원)을 제외한 금액(1,952,827천원)에 공시지가 상승률(4.0%)을 반영하여, 2010년도 예산액 대비 56.9% 감소한 36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 추계 : 36억 3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일반징수분(A) + 특별징수분(B)

- 일반징수(A) : **2,030,940**천원 = '10년도 징수전망액 × 공시지가 상승률
(8,662,759천원 - 6,709,932천원) × 104.0%

- 특별징수(B) : **1,600,000**천원 = 서울의료원 건물 및 주차장 임대수입

※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라 전여공간의 위탁관리에 따른 임대수입 특별징수분 반영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전망
예산액	2,025	2,307	1,434	1,308	1,389	8,423
부과액	892	1,371	1,592	4,123	8,761	8,719
징수액	859	1,338	1,547	3,904	8,233	8,663
일반징수	623	1,338	1,547	1,430	1,300	1,953
특별징수	235 (양천구 학교용지)	-	-	2,474 (질병관리본부)	6,933 (질병관리본부)	6,710
징수율	96.3%	97.6%	97.2%	94.7%	94.0%	99.3%

⇒ '05년 특별징수 : 양천구 학교용지(목동 922 13,621.7㎡), '06. 2월 매각완료(주택기획과)
 '08~'10년 특별징수 : 은평구 질병관리본부(녹번동 토지 102,684㎡ 건물 49,871.93),
 질병관리본부 '11년 충북 오송군 이전('10.10월 신축건물 완공)

■ 증지수입

- 증지수입은 공원 위탁·점용 허가 수수료, 묘지·화장장·납골당 사용료, 위생시험수수료, 기타 각종 증명수수료 등과 관련된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 증지수입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적용 추계하여 2010년도 예산대비 9.6% 증액된 7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증지수입 추계 : 7억 9천 8백만원

산 출 내 역	
○	최근 3년간 징수 평균액
▶	('08년도 징수액 + '09년도 징수액 + '10년도 징수전망액) ÷ 3 (840,125천원 + 823,767천원 + 728,404천원) ÷ 3 = 797,432천원

▶ 연도별 증지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	-	-	-	667	728	798
징수액	569	649	696	840	824	728	

■ 공금예금이자수입

-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운용 수입으로,
 -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평균잔액 감소에 따라 정기예금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이자율(2.0%~3.28%)을 적용 추계하여 2010년도 예산대비 45.7% 감액된 125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공금예금이자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2008년도)가 주요인이라 할 것임.
 -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보전분 지방교부세 규모는 14억 8천 9백만원(2010년도)에 그치고 있으나, “예산조기집행”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 규모(2009년도 △921억원, 2010년도 △45억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바,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와 서울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자금 활용 방안의 수립이 요망된다 할 것임.

▶ 공금예금이자수입 추계 : 125억 1천 7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이자수입 발생 추계				(단위 : 백만원)
기 간	월평균잔액	구성비	이자율(%)	이자액
계	78,629	100.0		12,517
6월 정기예금	3,146	4.0	3.28	671
3개월 정기예금	27,520	35.0	3.22	5,760
1개월 정기예금	30,665	39.0	2.88	5,740
상 시 예 금	17,298	22.0	2.0	346

산 출 내 역

○ 2011회계년도 월별 수입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수입액	14,296,194	690,982	648,094	733,870	843,475	1,486,804	1,401,027
지출액	13,352,645	654,279	623,574	707,690	814,511	948,037	814,511
잔 액	943,549	36,703	24,520	26,180	28,964	538,767	586,516
구 분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수입액	1,172,287	1,272,361	829,179	1,372,434	1,157,991	1,744,135	943,555
지출액	1,001,448	894,627	1,001,448	1,014,801	1,348,617	2,603,765	925,337
잔 액	170,839	377,734	-172,269	357,633	-190,626	-859,630	18,218

※ 수입액은 2010회계연도 당초예산(15,422,000백만원)의 7.3%를 하향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5년 평균 예산액 대비 지출액(93.4%)를 반영하여 분석

○ 전년도(2010년도) 이자수입 발생 추계

(단위 : 백만원)

기 간	월평균잔액	구성비	이자율(%)	이자액
계	172,119	100.0		23,050
12개월 정기예금	5,163	3.0	2.84	1,181
6개월 정기예금	8,606	5.0	2.69	1,851
3개월 정기예금	60,242	35.0	2.14	10,404
1개월 정기예금	63,684	37.0	1.83	9,387
상 시 예 금	34,424	20.0	1.2	227

○ 2010회계년도 월별 수입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수입액	15,792,384	708,444	804,077	909,637	994,778	1,663,082	1,576,887
지출액	13,750,722	690,403	663,643	747,360	865,983	999,573	892,751
잔 액	2,041,662	18,041	140,434	162,277	128,795	663,509	684,136
구 분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11년
수입액	1,320,852	1,425,967	942,212	1,541,802	1,305,082	1,948,012	526,272
지출액	1,050,103	941,903	1,054,527	1,067,516	1,407,630	2,704,519	664,812
잔 액	270,749	484,064	-112,315	474,286	-102,548	-756,507	-13,260

▶ 연도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전망	2011년 추계
예산액	58,487	40,094	63,638	80,060	23,050	12,517
결산액	47,630	91,232	104,319	12,197	7,652	

▶ 월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3,826	1,778	1,442	375	-	-	-	231	-	-			
2009년	12,197	4,239	2,336	-197	1,793	1,632	-389	231	-	-	153	1,069	1,330
2008년	104,319	5,711	5,830	6,091	6,440	6,693	8,409	9,480	10,463	11,751	11,488	13,403	8,560

■ 기타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운용에 따른 수입으로,
 - 세입세출외현금운용 이자수입의 경우는 2011년 1월 정기예금 예상액 (230억원)을 적용 추계하고 최근 3개월간 6월 예금시 평균이자율 (3.28%)을 적용하여 2010년도 대비 44.7% 감액된 7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기타이자수입 추계 : 7억 5천 4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기타이자수입 발생 추계 (11년도 정기예금 예상액 × 최근 3개월간 6월 예금시 평균이자율 (23,000,000천원 × 3.28%) = 754,400천원)						
▶ 연도별 기타이자수입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전망	2011년 추계
예산액	1,838	1,952	1,702	1,943	1,363	754
결산액	1,724	1,984	2,223	2,755	872	

■ 국유재산매각수입

- 국유재산매각수입 (시는 국유재산 매각 금액의 6.7%, 자치구는 13.3% 귀속)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징수전망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2010년도 대비 86.3% 증가한 66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유재산매각수입 추계 : 66억 6천 4백만원

산 출 내 역							
○ 최근 3년간 징수 평균액 ▶ ('08년도 징수액 + '09년도 징수액 + '10년도 징수전망액) ÷ 3 (5,159,721천원 + 8,292,279천원 + 6,538,789천원) ÷ 3 = 6,663,596천원							
▶ 연도별 국유재산 매각수입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7,000,000	7,492,462	5,335,332	3,004,246	3,004,246	3,577,084	6,663,596
부과액	8,185,353	6,507,024	17,503,841	5,345,512	8,532,279	6,713,134	6,855,551
부과액 증감률	13.1%	-20.5%	-7.6%	-11.1%	36.4%	-21.3%	2.1%
징수액	8,047,763	6,314,843	17,157,895	5,159,721	8,292,279	6,538,789	6,663,596
특별 부과건	-	-	11,489,650	-	-	-	
징수율	98.3%	97.0%	98.0%	96.5%	97.2%	97.4%	97.2%

※ 특별부과건 : 상도동 국유지 626필지 매각건

■ 시유재산매각수입

- 시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징수액 산술추계의 불균형으로 특별매각분을 제외한 최고징수분 3개년 평균으로 추계하여 2010년도 예산 대비 26.9% 감소한 1,234억 5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시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나 증감추세 등을 반영하지 않고 최고징수액만을 가지고 추계함으로써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바, 최고징수액에 의한 추계의 근거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당해 세입은 재산매각으로 예상되는 세입예산의 의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도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바, 재산매각수입의 예산편성은 중장기적인 재산매각 계획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다음연도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시유재산매각수입 추계 : 1,234억 5천 2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시유재산매각수입 추계
- 일반징수 : 64,743,561천원 [가] = 최근 5개년 중 최고 3개년 평균액 (61,182,082천원 + 70,577,771천원 + 62,470,831천원) ÷ 3
- 특별징수 : 58,708,070천원 = (A) + (B)
· 은평노인복지관부지 일부 매각(A) = 4,808,070천원
·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매각(B) = 53,900,000천원
▶ 일반징수분 재추계 : 56,365,803천원 [나] (최근 5개년 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액) (61,182,082천원 + 45,444,495천원 + 62,470,831천원) ÷ 3
▶ 시유재산매각수입 과대계상 : 8,377,758천원([가] - [나])

▶ 연도별 시유재산매각수입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54,543,000	503,497,000	50,627,857	406,182,000	168,879,927	64,743,561
부과액	35,455,466	62,864,804	73,138,905	425,734,538	266,135,747	66,540,145
부과액증감률	-33.7%	77.3%	16.3%	482.0%	-37.5%	-20.5%
징수액	35,061,194	61,182,082	70,577,771	415,444,495	264,533,929	64,743,561
일반징수	35,061,194	61,182,082	70,577,771	45,444,495	62,470,831	64,743,561
특별부과건	-	-	-	345,000,000 (복섬용지)	202,063,098 (SH공사 보상)	-
징수율	98.8%	97.3%	96.4%	95.0%	99.4%	97.3%

■ **잡수입** (변상금, 위약금, 체납처분 수입 및 기타잡수입)

- 변상금은 2010년도 전망액에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증가율을 반영한 추계로 2010년 예산 대비 119.1% 증가한 33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변상금 추계 : 33억 6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변상금 추계

(‘10년도 징수전망액 × 최근 3개월간 징수증가율
 (3,291,930천원 × 102.1%) = **3,361,060천원**

▶ 연도별 변상금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1,391,916	1,428,000	1,400,000	1,622,412	1,534,270	3,361,060
부과액	681,825	2,148,474	4,263,724	4,544,390	5,396,608	5,509,934
징수액	27,886	1,470,528	2,422,727	2,628,446	3,291,930	3,361,060
징수율(%)	4.1%	68.4%	56.8%	57.8%	61.0%	61.0%

※ 2006년도 강서구 변상금 소송(2005두15410) 환불액 1,205,943 발생으로 징수액 감소

- 위약금의 경우는 공사 및 납품 지체 위약금으로 2006년도 경찰청 수입분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4년간 징수액 평균금액으로 추계하여 2010년도 대비 46.2% 감소한 8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위약금 추계 : 8천 9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위약금 추계 최근 4년간 평균징수액('07년~'09년 징수액+'10년도 징수전망액) (129,312천원+101,226천원+37,950천원+87,280천원)÷4 = 88,942천원						
▶ 연도별 위약금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332,000	464,792	144,000	110,661	165,294	88,942
부과액	352,064	131,674	101,226	39,218	87,280	
징수액	350,445 (경찰청 85,102)	129,312	101,226	37,950	87,280	
징수율(%)	99.5%	98.2%	100.0%	96.8%	100.0%	

- 체납처분수입의 경우는 체납자가 압류부동산 매각 전에 지방세를 완납하는 경우 공매에 소요된 실비(대행수수료 등) 등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산술평균금액으로 추계하여 2010년도 대비 0.2% 증가한 7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체납처분수입 추계 : 757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체납처분수입 추계 최근 3년간 평균징수액(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 (14,580천원+2,798천원+5,337천원)÷3 = 7,571천원						
▶ 연도별 체납처분수입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0	0	0	0	7,459	7,571
부과액	28,946	16,908	10,201	5,337	8,000	
징수액	28,946	16,908	10,201	5,337	8,000	
징수율(%)	100.0%	100.0%	100.0%	100.0%	61.0%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10년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교부액(4,027,000천원)에 최근 3년간 시비 평균반환율(10.1%)을 적용하여 2010년도 대비 13.2% 감소한 4억 7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였고,

● 시·도비반환금수입 추계 : 4억 7백만원

산 출 내 역					
○ 2011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추계 '10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 × 최근 3년간 평균반환율 (4,027,000천원 × (16.2%+5.9%+8.2%)÷3 = 406,727천원					
▶ 연도별 시비보조금반환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20,725,100	21,115,000	8,555,000	468,600	406,727
반환액	124,125	710,916	164,407	272,270	406,727
전년도 보조금배정액	4,902,563	4,398,219	2,800,000	3,300,000	3,947,000
반환율(%)	2.5%	16.2%	5.9%	8.2%	10.3%

- 기타잡수입은 시금고출연금, '10년도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간접관리비 결산잔액 환수, '11년도 주행세·지방소비세 발생이자 등을 감안하여 422억 1천만원(전년 예산 대비 1,608.3% 증가)을 편성하였음.

● 기타잡수입 추계 : 422억 1천만원

산 출 내 역					
○ 시금고 출연금 : 40,000,000천원 - '11년도 납부 약정 체결 해당금액으로 추계 - 금고업무 취급약정기간 : 2011.1.1~2014.12.31(4년)					
▶ 연도별 출연계획 (단위: 천원)					
합 계	2011	2012	2013	2014	
150,000,000	40,000,000	40,000,000	35,000,000	35,000,000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정산금 : 743,919천원 - 특수요인(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금 10억원)을 제외한 최근 5년 중 3년 평균(최고·최저 제외) 적용 금액으로 추계 {(1,786,699천원+1,788,154천원+1,656,905천원)÷3}-1,000,000천원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간접관리비 결산잔액 현황 (단위: 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1,569,748	1,786,699	2,550,135	1,788,154	1,656,905	1,743,919

산 출 내 역

- 주행세·지방소비세 발생이자 등 기타잡수입(가+나+다) : 1,465,730천원
 - 최근 3년간 발생이자 등 평균징수액(가) : 760,295천원
(936,282천원+821,758천원+522,844천원)÷3
 - 지방소비세 발생이자(나) : 216,000천원
 - 대행사업비 발생이자(다) : 489,435천원

※ 연도별 기타잡수입(시금고 출연금 제외)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27,246,791	19,927,595	43,772,026	38,142,418	2,470,889	2,209,649
부과액	7,197,199	6,194,719	9,618,120	2,716,900	2,663,200	
징수액	7,141,567	6,178,276	9,465,605	2,674,576	2,633,200	
징수율(%)	99.2%	99.7%	98.4%	98.4%	100.0%	

-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는 지난년도의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과 소송비용회수금 등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저 2개년을 제외한 3개년 평균징수액 등으로 추계하여 2010년도 대비 32.7% 증가한 31억 2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지난년도 수입 추계 : 31억 2천 6백만원**

산 출 내 역

- **지난년도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 3,121,902천원
 -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최저 2개년을 제외한 3개년 평균징수액
(3,863,095천원+2,361,819천원+3,140,792천원)÷3

▶ 연도별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2,012,440	304,692,196	2,608,000	1,752,802	1,479,799	2,350,804	3,121,902
부과액	8,284,418	706,605,032	5,073,503	6,088,262	10,371,077	12,456,716	9,605,852
징수액	3,863,095	302,623,663	827,488	2,361,819	3,140,792	3,550,164	3,121,902
일반징수	3,863,095	499,663	827,488	2,361,819	3,140,792	3,550,164	3,121,902
특별징수		302,124,000					
징수율(%)	46.6%	42.9%	16.3%	38.8%	30.3%	28.5%	32.5%

※ 특별징수 : 목섬산업용지 매각수입

- **지난년도 소송비용 등 회수금** : 4,548천원
 -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최저 2개년을 제외한 3개년 평균징수액
(4,756천원+5,135천원+3,555천원)÷3

▶ 연도별 지난년도 소송비용 등 회수금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망	2011 추계
예산액	0	0	0	0	0	5,229	4,548
징수액	4,756	5,135	3,555	6,998	2,300	2,614	

■ 세입예산 종합의견

- 2011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 대비 과다 추계한 세목이 그 규모면에서 상당한 수준⁵⁾인 바, 이러한 상황이 예산담당관의 사전 조율에 의해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재무국 자체에서 세입을 과다하게 부풀려 추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재무국의 과다 세입예산편성은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의 근거로 활용되어 전시적 사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세입예산의 부족은 세출 예산의 집행제한을 가져오는 등 서울시 재정운용상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2011년도 세입예산 과대편성 세목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향후 예산 편성시 집행부의 적정규모의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또한, 시세수입과 관련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입 증감 사항의 반영은 물론 국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의 경우 국세의 예산 조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세입예산 재편성이 요망됨.

5) 실질경제성장률 5%적용(국회예산정책처 및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균은 4.2%)에 따른 취득세 180억원, 지방소비세 21억원과 지난년도 시세 142억원 등 총 343억원 수준임.

3. 세출예산 검토

가. 물품구매 관리의 효율화 사업

-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40% 증액된 9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사업개요

· 전자태그(RFID) 구입	37,800천원
· 전자태그외 사무관리비	23,18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200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등 자산취득비	778,750천원

- 전자태그는 물품의 체계적·합리적 관리를 통해 물품관리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자태그를 행정 청사 출입구 등에서 리더기를 통해 물품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바코드에 비해 투자금액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 ※ 청사 출입문에 전자태그 리더기능을 가진 장비를 설치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물품이 이동시 감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병행 추진이 없이는 물품관리 효과성 측면에서 바코드를 이용한 관리시스템과 차이가 없어 개선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었음.
-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전자태그를 통한 실질적인 물품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내년도 전자태그 구입 예산안은 추가적인 프로그램 구축 때까지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물품관리팀이 재무행정팀으로 흡수된 바,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의거한 업무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최적화 운영

- 재정의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행안부 개발·보급, 전국공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1.3% 감액된 3천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사업개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백만원
- 담당자 직무교육: 9백만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0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3,000	37,205	△4,205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 업	24,000	22,205	1,795	2011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24,000
사무관리비	9,000	15,000	△6,000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9,000

- 집행부는 서울시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중앙 정부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중인 관련시스템(6개)간의 자료 적기 제공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집행부는 재무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대상시스템과 관련되는 운영부서(6개 부서)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바, 동 협의체가 담당직원간 정보교환 기회 확보 및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 ※ 대상시스템(6) : 재정통합관리(예산담당관), 재무회계(정보시스템담당관), e-Banking(재무과), 공유재산·물품관리(재무과), 세무종합(세무과), 세외수입(38세금징수과)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발전방안 협의체 방안

- ① 통합·연계 시스템간 자료 적기제공 및 개선방안 협의회
 - 개최횟수 : 4회 (분기 1회)
 - 운영부서 : 재무과(총괄),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데이터센터
- ② 재정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통합워크샵
 - 개최횟수 : 1회
 - 관련부서 : 본청 · 사업소 · 자차구(재배정) 전 부서
 -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요구 : 수시

다.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무국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 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46% 감액된 1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사업개요

-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 ㉠ 구성인원 : 총 12명(당연직 1명, 위촉직 11명) ※ 교수 2, 변호사 2, 시민단체 2, 협회 3, 공무원 2)
 - ㉡ 심의내용 :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사전 심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② 시정청렴도 향상 외부 T/F회의
 - ㉠ 구성인원 : 7명
 - ㉡ 내 용 :
 - 외부적 관점에서 취약분야(공사계약/관리분야) 문제점 도출
 - 공사계약/관리 취약분야 문제점 파악·검토, 외부적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청렴시책 지속개발 추진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0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사 무 관 리 비	11,800	22,000	△ 10,200	·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800 · 청렴도향상 외부 T/F회의 운영 3,000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회의기록 방식 개선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으나, 오히려 금번 예산안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8회(중전 12회) 개최로 축소하여 편성된 바, 입찰절차와 방식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유·무형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짐.
- 공공부문 계약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입찰 방식의 형식적 측면에서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입찰업체에 대한 실질적 심사 방안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등을 고려할 때 계약심의 절차의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계약심사 업무추진

-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통한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원가계산 전문가 특강 및 실무교육을 통해 원가계산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2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 ①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 ㉠ 위 축 일 : 2010. 4. 1
 - ㉡ 구성인원 : 총 24명(위원장 1명, 구매·용역분야 3명, 토목분야 8명, 건축분야 5명, 설비분야 7명)
 - ㉢ 자문사항
 -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물품구매 및 용역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 ② 원가계산 전문가 특강 및 실무교육
 - ㉠ 원가계산 전문가 특강 : 2회(반기별 1회)
 - ㉡ 원가계산 실무교육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0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4,400	24,400	-	
사무관리비	4,400	4,400	-	·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4,4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00	20,000	-	·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 및 분야별심사업무추진 20,000

- 신기술·특수공법 및 공법 개선시 공정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음으로써 원가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나,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형식적 운영과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상의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문결과보고서 작성·비치를 포함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기능 확대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규모 이적지와 행정목적상 긴급한 토지수요 발생시 재산매입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p>①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3월 이전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유상이관 ㉡ 소요예산 : 27,000백만원(계약금 등)
<p>②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지방(울산) 이전 예정인 한국산업인력공단(마포구 공덕동 소재) 토지 및 건물 매입 ㉡ 소요예산 : 53,000백만원 (분납 잔금)
<p>③ 국·공유재산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수립 및 계약 체결, 차액 정산 후 소유권 이전</p>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1 예산(안)	2010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설비	95,000,000	100,000,000	△5,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매입 53,000백만원 ·서울의료원 유상매입 등 42,000백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집행부내 부서간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국이 '행정 수요 대비공유재산 확보 사업 예산'으로 매입하게 되는 바, 필요예산안은 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재산 교환 계획 및 계약체결시 차액정산을 대비하여 1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10년도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확보 사업 예산 불용률(2010년 11월 26일 현재)이 96.7%에 이르고 있는 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예산(150억원)에 대한 조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11월 6일 기준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100,000	3,253	96,747	96.7%	

※ 2010년 11월 6일 기준

구분	지출(예정)내역	금액
~10월말까지	통의동 마을마당 대체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조경과)	1,726
	경호처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 차액비	470
	상수도특별회계 재산 유상 이관비 (공원조성과)	1,030
11월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매입 계약금	17,600

바.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 세제 개편 등으로 자치구 세입이 감소할 때 서울시의 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예산인 바, 자치구세인 「승용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와 2011년 세제개편(세목교환)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보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에 의한 특별시분 재산세의 자치구 균등배분 및 2009년 특별시분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조 2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① 사업내용

- ㉠ 면허세 보전금 : 자치구 면허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2011년도 우리시 주행세 세입에 반영되는 면허세 세수보전액 만큼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
- ㉡ 공동재산세 전출금 :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교부
 -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08년 40%, '09년 45%, '10년 이후부터 50% 적용
- ㉢ 특별시분재산세감소분 보전금 : '09년 특별시분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 보전 받은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에 교부
- ㉣ 세제개편 자치구세 감소분 보전금 : '11년 세제개편(세목교환)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보전

② 산출방법

- ㉠ 면허세 보전금 : 전국 면허세 보전액(2,000억원) × 서울시 안분율(20.07%) = 40,140백만원
 - ※ 2010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 '11년 상반기 적용 주행세 안분비율 통보(20.07%)
- ㉡ 공동재산세 전출금 :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를 균등교부
 - ※ '11년 재산세 징수예상액 16,002억원 × 50% = 8,001억원
 - 체납분 징수예상액 63억원 × 50% = 31.5억원
- ㉢ 특별시분재산세감소분 보전금 : '09년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를 균등교부
 - ※ '09년 부동산교부세(특별시분재산세 감소분보전) : 27,575백만원
- ㉣ 세제개편 자치구세 감소분 보전금 : '11년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 1,517억원

※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세 감소분 보전금’은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세 시세기본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재원조정교부금(50%→60%)이 변경될 경우, 그 목적에 의거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사.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7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업개요

- | |
|---|
| <p>① 지방세심의위원회(1976.12.31.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원 수 : 총 14명(내부1명, 외부 13명) 2 운영방식 : 공개세무법정 연간 17회, 매회 외부위원 6명씩 참여/격회
※ 2008.4~7월 공개세무법정 4회 운영(36건 공개 17건 인용, 인용율 47.2%) 3 심의대상 : 지방세 신고납부·부과처분 등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적부·당부 <p>②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1997.10.1.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원 수 : 총 10명(내부3명, 외부 7명) 2 운영방식 : 연간 17회, 매회 외부위원 4명씩 참여/격회 3 심의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 종교단체 비과세 신청반려 및 과세예고 추징시 <p>③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2000.11.11.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원 수 : 총 9명(내부3명, 외부 6명) 2 운영방식 : 연간 2회, 매회 외부위원 6명씩 참여/회 3 심의대상 : 지방세 과세표준결정기준인 시가표준액 심의 |
|---|

- 지방세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는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0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4,303	71,210	23,093	
사무관리비	48,703	53,210	△4,507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36,703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운영 10,800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운영 1,2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0	18,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0
특정업무 경비	27,600	-	27,600	세무활동비(수당) 27,600

아. 단순·반복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

- 기본경비 항목으로 회계장부 제작(2천만원), 재무회계 법규 정비 및 추록(16백만원), 수입증지 제조(16백만원)등 인쇄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각종 사무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해 인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서 매년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불용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있음.

▶ 인쇄비 관련 사업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2008				2009				2010(10월말기준)			
	예산액	지출액	잔액	불용률	예산액	지출액	잔액	불용률	예산액	지출액	잔액	불용률
회계장부 등 인쇄	16,000	3,376	12,624	79%	20,040	1,047	18,993	95%	20,040	-	20,040	100%
재무회계 법률정비 및 추록	16,000	4,752	11,248	70.3%	1,500	-	1,500	100%	16,000	4,365	11,635	73%
업무계획서 및 사례집	12,000	4,234	7,766	64.7%	12,000	4,353	7,647	63.7%	12,000	6,668	5,332	44.4%
수입증지 제조	15,632	9,467	6,165	39%	15,632	11,174	4,458	29%	15,632	6,199	9,433	60%

▶ 수입증지 현황(전자 및 종이에 의한 각각의 수입)

(단위:천원)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10월말)		
	계	전자	종이	계	전자	종이	계	전자	종이
내역	3,670,796	742,570	2,928,226	3,758,608	1,863,401	1,895,207	2,945,531	2,002,867	942,664

- 수입증지 현황을 보면 종이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추세가 '08년도 대비 '09년도의 경우 32% 감소하고 있는 바, 2010년도 10월말 기준을 고려할 때 그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집행부의 기본경비로써 계상된 각종 인쇄비의 불용률이 매년 상당하다는 점은 종전과 달리 안정적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종이 사용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때, 인쇄 수요 감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업무환경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쇄비 예산을 관례적으로 단순·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에 대한 예산조정이 요망된다고 사료됨.